

-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, 인권존중을 위한 -
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구제 매뉴얼

2020. 12

[재]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
[경영기획 TF]

|| 목 차 ||

I. 추진 배경.....	1
II. 구제절차 연구 및 제도 마련.....	1
III. 구제절차 매뉴얼 구축.....	2
IV. 구제절차 공개 및 신고접수창구 마련.....	4
V. 인권경영 구제절차 매뉴얼.....	5

-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, 인권존중을 위한 -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구제 매뉴얼

I 추진 배경

-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,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권피해자 보호 및 인권침해 재발 방지 도모
- **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기준 권고사항 준수**

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기준 권고사항	월드컵 재단 인권경영 추진 계획
1.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	① 구제절차 연구 및 제도 마련
2. 구제절차 수립	② 구제절차 매뉴얼 구축
3. 구제절차 시행, 평가와 개선	③ 구제제도 공개 및 접수창구 마련

II 구제절차 연구 및 제도 마련

- **[제도구축]** 인권경영 이행지침의 내부 조항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정으로 제도화
- **[신고센터]**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경영기획 부장을 “인권경영책임관”으로 지정
- **[비밀유지]** 인권침해 피해자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,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됨.
- **[구제기구 설치]**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운영기구로 인권침해 전담기구 별도설치 (인권경영 위원회 중임)

내부위원	인권경영위원회 내부위원(4인)
외부위원	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(3인)
간 사	인권구제책임관(1인)

- **[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]** 구제절차의 효용성,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부진분야 발굴개선

구제절차 기구 구성 및 역할

전담기구		구제절차 관련구성		전담기구	[구제절차 기구 별 역할]
주관부서	경영기획	인권경영 책임관 인권구제 책임관	경영기획 부장 경영기획 과장	접수 주관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구제절차 안내, 인권침해 접수창구운영 •신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류
협력기구	고충처리 위원회	성희롱성폭력 위원회 인사위원회	외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	조사 인권신고 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고사항 조사 수행(필요시 감사 협조) •조사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'합의' 권고 •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작성 및 인권위원회상정
인권경영 구제위원회	위원장	인권경영 위원장		심의 의결 인권경영 구제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, 기각, 합의, 이송 등의 결정 - (조정)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 - (권고)비사법적 구제수단(내부) 사법적 구제수단(외부) - (기각)조사결과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	내부위원	인권경영 내부위원			
	외부위원	인권경영 외부위원			
	간사	인권구제 책임관	경영기획과장		
				이행 협력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위반사항 시정 및 구제방안 시행 •심의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 시행

III 구제절차 매뉴얼 구축

○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심의 의결기구로 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수립

- **[신고접수]** 인권신고센터 방문, 우편,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접수
 - ※ 인권경영 책임관의 각하 또는 조사여부 판단
- **[사건조사 및 합의 권고]** 인권구제책임관이 당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조사 및 진술서, 자료제출 등 요구, 필요 시 면담조사 수행
 - ※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음(강제적 합의 권고 불가)
- **[구제절차]** 신고내용을 토대로 인권구제책임관이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, 구제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

<p>① 구제위원회 개최 :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사건조사 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.</p> <p>② 구제위원회 심의 : 사실관계와의 증거 등을 토대로 심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(심의)</p> <p>③ 구제위원회 의결 :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권고, 기각, 합의, 이송 등을 결정</p> <p> ㉠ 조정 :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</p> <p> ㉡ 권고 :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관 내부 징계, 제도개선 권고,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관 외부의 신고, 진정, 고소, 고발, 법률구조요청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안내</p> <p> ㉢ 기각 :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</p> <p>④ 처리결과 통보 :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</p> <p>⇒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, 해당 기간(14일)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,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이내 재심의</p>
--

- **[기관 통보]** 피침해자(신고인, 침해자) 소속기관 인권신고센터에 의결사항을 통보
- **[당사자 통보]** 피침해자(신고인, 침해자) 구제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결과에 불복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및 안내

[구제절차 운영 프로세스]

신고접수	사건조사 및 조정	구제절차	신고인,피신고인(통보)	당사자 통보(종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방문,우편,인터넷,신청서 •인권 해당여부 판단을 통한 각하 또는 사건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인권침해 사실 조사 •진술서 및 자료제출요구 •필요시 실질조사 실시 •당사자간 합의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비사법적/사법적 구제수단 •외부구제절차와의 연계 •제도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관련부서 및 관련 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•최고경영진 및 경영자 구제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피침해자(신고인, 침해자) 구제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•불복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
인권경영 주관부서	인권구제책임관	구제위원회	필요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, 감사 등	당사자 통보 및 사건종결
인권경영책임관				



구제위원회 개최	구제위원회 심의	구제위원회 의결	처리결과 통보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최종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 후 10일 이내 재개최 •인권경영위원회로 대체 •사건조사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 진술서 제출 요구, 출석요구가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(심의결정) •사실관계와의 증거 등을 심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권고,기각,합의,이송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•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•처리 결과 통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, 위원회는 당해사안을 10일 이내 재심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비사법적 구제수단(내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징계 권고, 제도 개선 •사법적 구제수단(외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정,고소,고발 법률검토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각 •인권침해 사실 없음 	

○ 구제절차 운영방안

- **[신고의 각하]**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, 피해자의 의사, 기한의 경과 등의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 할 수 있음.

[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]

①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②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③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④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
※ 다만,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⑤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⑥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- ⑦ 위원회가 기각한 신고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- ⑧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경우

• **[조정]** 구제위원회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조정 실시 가능

① 조정의 시작	② 당사자 조정 실시	③ 조정 합의	④ 조정 성립
당사자 신청 구제위원회 직권	당사자 합의	심의결정서 작성	이의제기 가능

• **[권고]** 위원회는 고발 및 고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 또는 징계, 제도개선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 권고 가능

(의견진술) 침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가능

• **[기각]** 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가능

- ① 신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
- ②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③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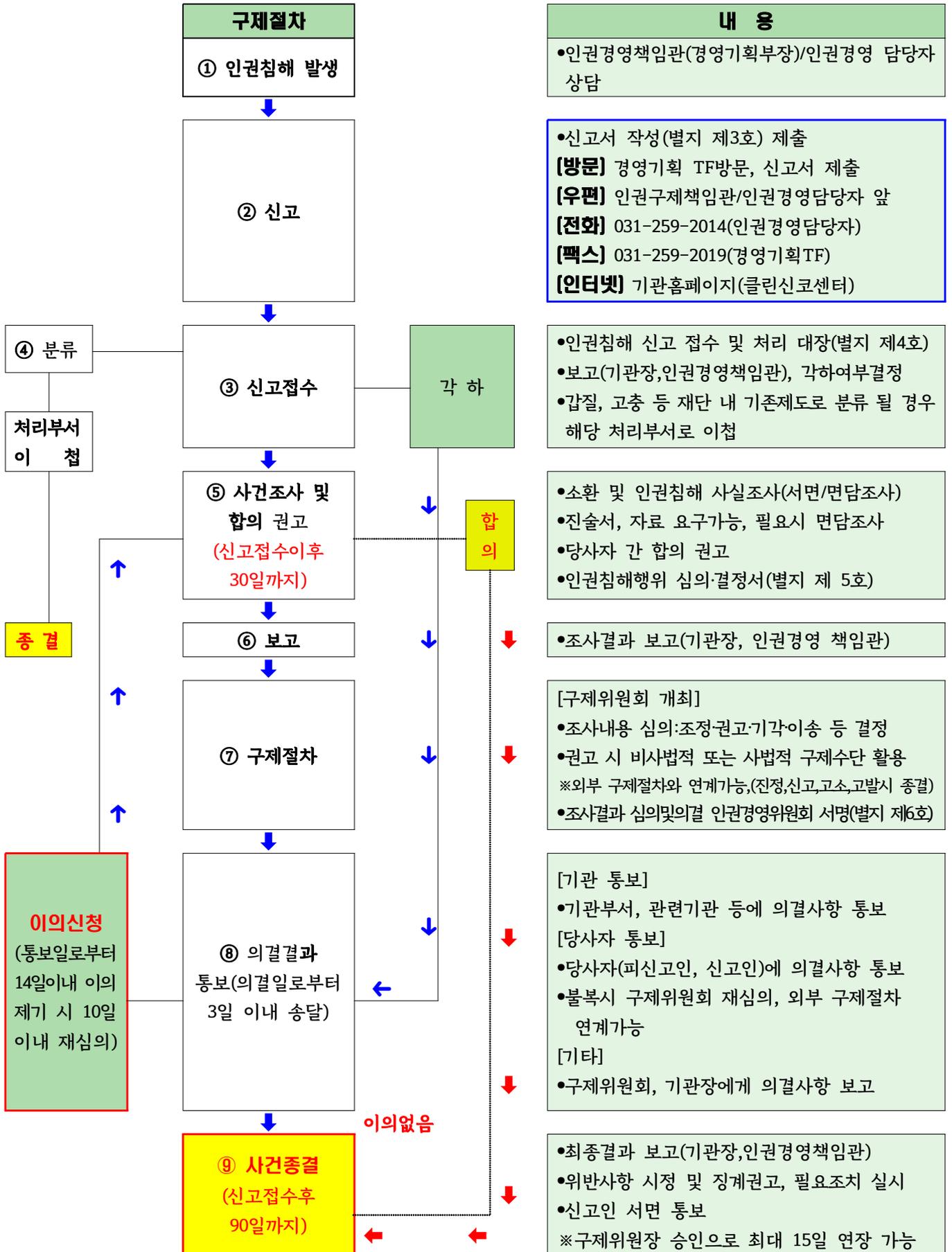
• **[추가조사]** 위원회는 조사미비 및 진술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재청취, 당사자 출석요구, 자료 제출요구 등 가능

• **[타기관 연계]** 신고인이 구제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복 시 조사, 증거확보, 권리구제를 위해 구제위원회 재심의가 가능하며, 필요 시 외부 타 절차와 연계가능

※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타기관의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신고인의 인권침해 사실의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함.

IV 구제절차 공개 및 신고접수 창구 마련

-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구제제도 홍보(기관 홈페이지 게시)
- 신고 접수창구 마련으로 구제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상시 구제신청 시스템 운영
- ※ 전화, 전자우편, 인터넷 등 신고 접수 채널의 효율적 활용



○ 인권침해 신고(별지 제3호)

부서 방문	경영기획 TF 방문, 인권침해 신고서 제출
우편 발송	월드컵재단 관리본부 경영기획TF 인권구제책임관/인권경영담당자
전화·팩스	경영기획 TF 전화 031-259-2014 / 팩스 031-259-2019
홈페이지	재단홈페이지(www.suwonworldcup.or.kr) → 클린신고센터

○ 조사 및 보고

주관부서	접수대장(별지 제4호) 작성, 기관장 및 인권경영책임관 보고
조사착수	(인권구제책임관 사건조사) 신고인, 피침해자, 관계인 등에 대한 서면·면담조사
보 고	조사결과(별지 제5호) 기관장 및 인권경영책임관 보고, 구제위원회 상정
기 타	수사기관 등에 진정·고소·고발 등이 있을 시 조사가 종결됨을 신고인에게 안내, 신고인이 외부 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는 즉시 내부 구제절차는 종결되며, 최종 결과는 외부 조사결과 중 상위법을 따름 안내.

○ 구제절차 : 사건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조정, 권고, 기각, 이송 등 결정(별지 제6호)

구 분	내 용
조 정	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
권 고	비사법적 (내부) 징계 권고 / 제도개선
	사 법 적 (외부) 진정, 고소, 고발, 법률구조요청 안내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기 각	인권침해 사실 없음.

○ 의결결과 통보

①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의결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
② 양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인권경영 주관부서 (경영기획 TF) 서면 통보해야 함.
※ 양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, 구제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이내 재심의

○ 사건종결

① 최종결과 보고(기관장, 인권경영책임관)
②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, 필요 조치 실시
※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(인사관리규정) 중 징계관련 조항에 따름
③ 신고인 최종 서면 통보

[별지 제5호 서식]

인권침해행위 심의 · 결정서

심의 및 결정일 : 20 . . .

제 회(정기, 임시)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.

다 음

건 명	
결정 내용	

년 월 일

(재)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(인)

[별지 제6호 서식]

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**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**

20 년 월 일

(재)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권경영위원회

위 심의·결정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서명 날인함

	성 명	날 인	의 견
위원장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